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61호 2017. 5. 2(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39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45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7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20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53명 ⇒ 975명 (증 22명)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안 별표 2)
 - 일 반 직 (비율 조정)
 - 6급 : 일반직 정원의 23% ⇒ 24% (1% 증)
 - 8급 : 일반직 정원의 30% ⇒ 29% (1%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49명 ⇒ 971명 (증 22명)
 - 5급 : 60명 ⇒ 61명 (증 1명)
 - 6급이하 : 882명 ⇒ 903명 (증 21명)

※ 추가소요 인건비 : 979,999천원 (내역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53명 ⇒ 975명 (증 22명)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안 별표 2)
 - 일 반 직 (비율 조정)
 - 6급 : 일반직 정원의 23% ⇒ 24% (1% 증)
 - 8급 : 일반직 정원의 30% ⇒ 29% (1%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49명 ⇒ 971명 (증 22명)
 - 5급 : 60명 ⇒ 61명 (증 1명)
 - 6급이하 : 882명 ⇒ 903명 (증 21명)
- ※ 추가소요 인건비 : 979,999천원 (내역 별첨)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53”을 “975”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35”을 “956”로
제2호 중 “18”을 “19”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4% 이내	29% 이내	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40% 이내	13% 이상	10%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u>975</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971</u>	-				
2급	1	1				
4급	6	4	1	1		
5급	<u>61</u>	<u>31</u>	2	6	1	21
6급 이하 계	<u>903</u>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95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935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생 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th> </tr> <tr> <th style="width: 30%;">6급</th> <th style="width: 30%;">8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23%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이내</td> </tr> </tbody> </table> <p>2. 연구직공무원 (생 략)</p> <p>3. 별정직공무원 (생 략)</p>	구분	일반직		6급	8급	비율	23%이내	30%이내	<p>제2조(정원의 총수) ----- ----- ----- 975----- -----.</p> <p>1. -----: 956----- 2. -----: 19-----</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th> </tr> <tr> <th style="width: 30%;">6급</th> <th style="width: 30%;">8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9%이내</td> </tr> </tbody> </table> <p>2. 연구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3.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구분	일반직		6급	8급	비율	24%이내	29%이내
구분		일반직															
	6급	8급															
비율	23%이내	30%이내															
구분	일반직																
	6급	8급															
비율	24%이내	29%이내															

현	개																																																																																																																																																																																																				
행	정																																																																																																																																																																																																				
안	안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 사무 기구</th> <th style="width: 10%;">직속 기관</th> <th style="width: 10%;">출장 소</th> <th style="width: 10%;">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953</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949</td> <td colspan="5">-</td> </tr> <tr> <td>2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td> <td>4</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60</td> <td>30</td> <td>2</td> <td>6</td> <td>1</td> <td>21</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882</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r> <td>5급 상당</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6급상당이하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9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8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 사무 기구</th> <th style="width: 10%;">직속 기관</th> <th style="width: 10%;">출장 소</th> <th style="width: 10%;">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975</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971</td> <td colspan="5">-</td> </tr> <tr> <td>2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td> <td>4</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61</td> <td>31</td> <td>2</td> <td>6</td> <td>1</td> <td>21</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903</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r> <td>5급 상당</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6급상당이하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71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1	31	2	6	1	21	6급 이하 계	90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9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8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 계	9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71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1	31	2	6	1	21																																																																																																																																																																																															
6급 이하 계	90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상당이하 계	2	-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979,998,230							
1. 인건비	875,009,650							
가. 기본급	698,190,000	○ 4급(연봉제)	80,411,000					
		○ 5급(연봉제)	51,684,000	1		51,684,000		
		○ 6급(24호봉)	3,610,900	14		12	606,631,200	
		○ 7급(14호봉)	2,741,900	-1		12	-32,902,800	
		○ 8급(8호봉)	2,122,300	-11		12	-280,143,600	
		○ 9급(3호봉)	1,547,900	19		12	352,921,200	
							0	
나. 상여금	43,055,050	○ 정근수당	698,190,000	22	0.08	2	43,055,050	90%평균
다. 정액수당	133,764,600							
1)가족수당	8,025,600	○ 배우자	40,000	11	0.78	12	4,118,400	
		○ 존비속	20,000	11	1.48	12	3,907,200	
2)정근수당가산금	21,600,000	○ 25년 이상	130,000	1		12	1,56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7		12	9,240,000	
		○ 15년~20년미만	80,000	7		12	6,720,000	
		○ 10년~15년미만	60,000	-1		12	-720,000	
		○ 5년~10년미만	50,000	8		12	4,800,000	
3) 정액급식비	34,320,000	○ 일반직	130,000	22		12	34,320,000	
4) 명절휴가비	69,819,000	○ 명절휴가	698,190,000		0.05	2	69,819,000	
2. 직무수행경비	37,440,000							
가. 직책업무추진비	0	○ 4급	350,000			12	0	
		○ 5급	100,000			12	0	
나. 직급보조비	37,440,000	○ 4급	400,000			12	0	
		○ 5급	250,000	1		12	3,000,000	
		○ 6급	155,000	14		12	26,040,000	
		○ 7급	140,000	-1		12	-1,680,000	
		○ 8급	105,000	-11		12	-13,860,000	
		○ 9급	105,000	19		12	23,940,000	
3. 포상금	67,548,580							
가. 성과상여금	67,548,580	○ 5급~9급	3,070,390	22		1	67,548,580	

주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 정원 : 953명 ⇒ 975명 (증 22명)
 - 일반직 : 949명 ⇒ 971명 (증 22명)
 - 5급 : 60명 ⇒ 61명 (증 1명)
 - 6급 : 216명 ⇒ 230명 (증 14명)
 - 7급 : 319명 ⇒ 318명 (감 1명)
 - 8급 : 272명 ⇒ 261명 (감 11명)
 - 9급 : 75명 ⇒ 94명 (증 19명)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75	624	19	48	16	30	238	(8)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71	620	19	48	16	30	238	(8)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6	4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61	31	2	4	2	1	21	
행 정		14	12	2					
의 무		3			2	1			
운 전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7	7						
행정·사회복지·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3	1					2	
행정·녹지·보건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2017. 05. 02.()		비고 (행정복지)
							출장소	동	
행정 · 녹지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의무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6급 소계		230	164	6	13	4	6	37	
행정		91	69	4			1	17	
세무		6	6						
전산		1	1						
사회복지		7	7						
속기		1		1					
공업		6	6						
농업		1	1						
녹지		4	4						
수의		1	1						
보건		4	3		1				
의료기술		2			2				
간호		4			3	1			
환경		6	6						
시설		18	16				2		
방송통신		1	1						
운전		5	3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 · 세무		12	9					3	
행정 · 사회복지		22	7					15	
행정 · 공업		2	2						
행정 · 농업		2					1	1	
행정 · 보건		3	2				1		
행정 · 환경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2017. 05. 02.()		비고 (행정복지)
							출장소	동	
행 정 · 시 설		10	10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녹 지 · 시 설		1	1						
간 호 · 의 료 기 술		3			2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2	2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4			3	1			
행 정 ·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 약 무		1			1				
7급 소계		318	211	5	15	6	14	67	(1)
행 정		111	65	3			2	41	(1)
세 무		29	29						
전 산		4	4						
사 회 복 지		28	22					6	
속 기		1		1					
공 업		11	9				2		
농 업		2	1				1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4	1	1		
의 료 기 술		4			3	1			
간 호		6			5	1			
환 경		11	11						
시 설		43	38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7	2		1		1	13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8	1	1			2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사회 복지		6	3					3	
보건 · 간 호		1			1				
수 의 · 농 업		1	1						
의료기술 · 식품위생		2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2				2			
8급 소계		261	162	4	14	3	9	69	(6)
행 정		112	66	3	1			42	(6)
세 무		12	12						
전 산		3	3						
사 회 복 지		36	16					20	
공 업		5	5						
농 업		1	1						
녹 지		6	6						
보 건		9	5		2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5			4	1			
환 경		12	12						
시 설		32	26				6		
방 송 통 신		3	3						
운 전		6		1	1			4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3	2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2	
행 정 · 농 업		1						1	
보 건 · 공 업		1	1						
보 건 · 간 호		1			1				
의료기술 · 식품위생		1				1			
환 경 · 공 업		1					1		
보건 · 의료기술 · 식품위생		3			3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9급 소계		94	47	1	1	1		44	(1)
행	정	40	18	1				21	(1)
세	무	4	4						
사	회 복 지	37	13		1			23	
공	업	2	2						
녹	지	2	2						
보	건	1				1			
환	경	2	2						
시	설	4	4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환 경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 검단출장소 세무민원발급업무 본청 통합에 따른 사무조정
- 변경사무 정비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6개소
 -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 청라2동 주민센터 ⇒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1동 주민센터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1동 주민센터 ⇒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 검단4동 주민센터 ⇒ 검단4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조정

- GIS관련업무 : 토지정보과 ⇒ 기획예산실
-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업무 : 감사실 ⇒ 민원봉사과
- 마을공동체 업무 : 총무과 ⇒ 일자리지원과
- 세무 민원발급 업무 본청 통합에 따른 출장소 사무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7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 사무조정에 따른 변경사무 정비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6개소
 -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 청라2동 주민센터 ⇒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1동 주민센터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1동 주민센터 ⇒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 검단4동 주민센터 ⇒ 검단4동 행정복지센터
- 사무조정
 - GIS 관련업무 : 토지정보과 ⇒ 기획예산실
 -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업무 : 감사실 ⇒ 민원봉사과
 - 마을공동체 업무 : 총무과 ⇒ 일자리지원과
 - 출장소 사무 중 세무관련 상담 및 제증명 발급 업무 삭제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7. 공간정보(GIS) 운영

제6조제2항에 제108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

제17조에 제14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2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총무국) ① (생 략)</p> <p>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07. (생 략)</p> <p><u>108. 공간정보(GIS) 총괄 운영</u></p> <p>109. · 110. (생 략)</p> <p>제7조의2(경제환경국) ① (생 략)</p> <p>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5. (생 략)</p> <p><u><신 설></u></p> <p>제17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13. (생 략)</p> <p><u>14. 세무관련 상담 및 제증명 발급</u></p>	<p>제4조(기획예산실) ----- -----.</p> <p>1. ~ 25. (현행과 같음)</p> <p><u>2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u></p> <p><u>27. 공간정보(GIS) 운영</u></p> <p>제6조(총무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0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09. · 110.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경제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5. (현행과 같음)</p> <p><u>56.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u></p> <p>제17조(소관사무)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p>		<p>[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p>		
구분	소재지	구분	소재지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검암경서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58(연희동)	
청라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269 (경서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269 (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청라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5(경서동)	
가정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1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17 (가정동)	가정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 (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12-16 (가정동)	가정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서구 서달로 179번길 12-16 (가정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	신현원창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 (석남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 (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석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 (가좌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 (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 (가좌동)	가좌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 (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 (가좌동)	가좌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 (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 (가좌동)	가좌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 (가좌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마전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검단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사무 조정 및 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무정비

2. 주요내용

- 사무조정
 - GIS 관련업무 : 토지정보과 ⇒ 기획예산실
 -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업무 : 감사실 ⇒ 민원봉사과
 - 마을공동체 업무 : 총무과 ⇒ 일자리지원과
 - 출장소 사무 중 세무민원 발급 및 민원상담 업무 삭제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여성보육과, 일자리 지원과 분장사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획 예 산 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5. 공무원 관내외 출장·통제
	6.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7. 기구 및 정원조정
	8. 조직 및 인력진단
	9.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
	10. 주간, 월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의회 운영 지원
	1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운영상황 동향 보고
	15.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16. 행정자료실 운영
	17. 구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18. 구정업무 연구 연찬
	19. 구민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개발
	20. 구정시책 발굴 및 평가
	21. 구정 청사진개발 및 비전제시
	22.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및 확인평가
	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24. 해외사절단 파견 등 계획 수립
	25.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26. 국제자매도시 협의회 운영
	2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8.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9. 총괄 기금 관리



30.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
31.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재배정
32. 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33.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34. 지방채, 일시차입금, 조상충용충담금, 채무부담행위 조정
35.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
36. 국고보조금 신청
37. 세입·세출 실행예산 편성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요구
39. 지방채 발행 및 승인요구
40.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
41. 교육예산 지원 승인요구
42. 세출예산 이체
43. 세출예산 이용
44. 세출예산 전용
45. 세입세출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46.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47. 기금출연 및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48. 구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9.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제·개정, 폐지 및 심사 공포
50. 고시, 공고, 예규, 훈령 등 중요문서의 심사
5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5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5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5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5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5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9.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공탁금 지출 및 회수
61.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2.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63.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64. 통계의 분석 공표
65.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66. 도·소매인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67. 인구주택 총조사
68.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69. 인천사회지표 통계조사
70.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71.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자료조사
72. 광공업 통계조사
73. 산업총조사
74. 고용구조 통계조사
75.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76. 통신종합계획 수립시행
77. FAX 시설운영 유지관리
78. 행정 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79. 통신보안 관리
80.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의 통합관리
81. 구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개발계획 수립 시행
82. 통신기술 교육 훈련
8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84. 기타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85.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관리
86.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
87. 지역특화사업 추진
8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89.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90.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 및 지휘감독
91.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92. 국·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나.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라.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마. 가정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사.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사업
93. 국·시책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완료된 사업 제외)
94. 인구정책관련 계획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발굴
95.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출산장려시책 발굴
96. 관계기관 및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97. 공간정보(GIS) 운영
98. 공간정보 분석 및 정책지도 제작
99.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 및 지원



[별표 3]

출장소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검 단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출 장 소
	2.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기부금품 통제
	7.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재산관리
	10.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1.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2.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3.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4. 건설에 관한 사무
	15. 건축에 관한 사무
	16. 자연재해 방재대책
	17. 보안등에 관한 사무
	1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본청과 검단출장소 세무민원발급 업무 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조정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별표 3)
 -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검단출장소 세무민원발급 업무 본청 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조정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별표 3)
 -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삭제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동법 제24조 - 동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동법 제61조,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동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동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동조례 제21조 - 동조례 제22조 - 동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체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동조례 제17조 - 동조례 제18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1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3조의2</p> <p>-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p> <p>-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p>	
	2	<p>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허가 등</p> <p>나. 영업 승계</p> <p>다. 출입·검사·수거 등</p> <p>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p> <p>마. 벌칙</p>	<p>- 식품위생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p> <p>-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p>	
자원순환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p>- 동법 제39조</p> <p>- 동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p> <p>- 기타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p>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 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 19조, 제3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9조</p> <p>- 동법 제34조</p> <p>- 동법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6조</p> <p>-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에너지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제 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 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의3 - 동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동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6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동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동법 제28조의2 - 동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동법 제13조의5 - 동법 제14조의4 - 동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동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2 3 4 5 6 7 8 9	<p>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p> <p>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p> <p>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p> <p>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p> <p>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p> <p>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p> <p>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착공신고의 수리</p> <p>나. 사용승인서 교부</p> <p>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p> <p>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p>	<p>-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p> <p>-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p> <p>- 건축법 제11조, 제16조</p> <p>-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p> <p>- 건축법 제20조</p> <p>- 건축법 제83조</p> <p>- 건축법 제21조</p> <p>- 건축법 제22조</p> <p>- 건축법 제36조</p> <p>-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	
도시재생 경관과	1	<p>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p> <p>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p> <p>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p> <p>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p> <p>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p> <p>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p> <p>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p> <p>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p>	<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p> <p>-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p> <p>-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p> <p>-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p> <p>- 동법 제10조</p> <p>-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p> <p>- 동법 제13조</p> <p>-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p> <p>- 동법 제17조</p> <p>- 동법 제20조</p> <p>- 동법 제20조의2</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53	614	18	46	16	33	226	(11)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49	610	18	46	16	33	226	(11)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6	4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 관 · 기 술 서 기 관		2	2						
5급 소계		60	30	2	4	2	1	21	
행 정		14	12	2					
의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7	7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3	1					2	
행 정 · 녹 지 · 보 건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2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2017. 05. 02.()		비고 (행정복지)
							출장소	동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의 무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 약무		1			1				
6급 소계		216	159	4	12	4	6	31	
행 정		94	71	3			1	19	
세 무		7	7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7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4	4						
수 의		1	1						
보 건		4	3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4			3	1			
환 경		6	6						
시 설		18	16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3	1				1	
기 계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6	6						
행 정 · 사 회 복 지		15	5					10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2					1	1	
행 정 · 보 건		3	2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8	8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2017. 05. 02.()		비고 (행정복지)
							출장소	동	
녹 지 · 시 설		1	1						
간 호 · 의 료 기 술		2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2	2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4			3	1			
행 정 ·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 약 무		1			1				
7급 소계		319	211	6	15	6	15	66	(2)
행 정		111	65	3			2	41	(2)
세 무		29	28				1		
전 산		4	4						
사 회 복 지		28	22					6	
속 기		2		2					
공 업		11	9				2		
농 업		2	1				1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4	1	1		
의 료 기 술		4			3	1			
간 호		6			5	1			
환 경		11	11						
시 설		42	37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7	3		1		1	12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9	2	1			2	4	
행 정 · 사 회 복 지		6	3					3	
보 건 · 간 호		1			1				
수 의 · 농 업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2017. 05. 02.()		비고 (행정복지)
							출장소	동	
의료기술·식품위생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8급 소계		272	171	4	13	3	11	70	(7)
행정		115	70	2	1			42	(7)
세무		13	12				1		
전산		3	3						
사회복지		38	18					20	
공업		5	5						
농업		1	1						
녹지		6	6						
보건		9	5		2		2		
의료기술		1				1			
간호		5			4	1			
환경		12	12						
시설		34	28				6		
방송통신		3	3						
운전		10	2	1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1						1	
보건·공업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1			
환경·공업		1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3				
9급 소계		75	34	1	1	1		38	(2)
행정		36	12	1				23	(2)
세무		5	5						
사회복지		22	6		1			15	

1261		기관별		2017. 05. 02.()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공	업	1	1						
녹	지	1	1						
보	건	1				1			
환	경	2	2						
시	설	4	4						
사	무	2	2						
행	정 · 환 경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953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949	
		2급	1	행정 1
		4급	6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2
		5급	60	행정 14, 의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7,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녹지·보건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의무·보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6급	216	행정 94, 세무 7, 전산 1, 사회복지 7, 공업 6, 농업 1, 녹지 4, 수의 1, 보건 4, 의료기술 2, 간호 4, 환경 6, 시설 18, 방송통신 1, 운전 5, 기계운영 1, 행정·세무 6, 행정·사회복지 15, 행정·공업 2, 행정·농업 2, 행정·보건 3, 행정·환경 2, 행정·시설 8,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간호·의료기술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2,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319	행정 111, 세무 29, 전산 4, 사회복지 28, 속기 2, 공업 11, 농업 2, 녹지 6,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6, 환경 11, 시설 42,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7,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9, 행정·사회복지 6, 보건·간호 1, 수의·농업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272	행정 115, 세무 13, 전산 3, 사회복지 38, 공업 5, 농업 1, 녹지 6, 보건 9, 의료기술 1, 간호 5, 환경 12, 시설 34, 방송통신 3, 운전 10,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3, 전산·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3, 행정·농업 1, 보건·공업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환경·공업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급	75	행정 36, 세무 5, 사회복지 22, 공업 1, 녹지 1, 보건 1, 환경 2, 시설 4, 사무운영 2, 행정·환경 1
	별정직	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청	계		614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610	
		2급		1	행정 1
		4급		4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2
		5급		30	행정 12,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7, 행정·공업·농업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6급		159	행정 71, 세무 7, 전산 1, 사회복지 7, 공업 6, 농업 1, 녹지 4, 수의 1, 보건 3, 환경 6, 시설 16, 방송통신 1, 운전 3, 기계운영 1, 행정·세무 6,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8,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녹지·시설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2
		7급		211	행정 65, 세무 28, 전산 4, 사회복지 22, 공업 9, 농업 1, 녹지 6,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1, 시설 37,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2, 행정·사회복지 3, 수의·농업 1
		8급		171	행정 70, 세무 12, 전산 3, 사회복지 18, 공업 5, 농업 1, 녹지 6, 보건 5, 환경 12, 시설 28, 방송통신 3,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전산·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1, 보건·공업 1
		9급		34	행정 12, 세무 5, 사회복지 6, 공업 1, 녹지 1, 환경 2, 시설 4, 사무운영 2, 행정·환경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18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4	행정 3, 운전 1
		7급		6	행정 3, 속기 2,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2, 운전 1, 사무운영 1
		9급		1	행정 1
보건소	일반직	소계		62	
		4급		1	기술 1
		5급		6	의무 3, 의무·보건·간호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6급	16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4, 간호·의료기술 2, 행정·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1
		7급	21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6, 운전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8급	16	행정 1,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5, 운전 1, 사무운영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출 장 소	일반직	계	33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5	행정 2, 세무 1, 공업 2, 농업 1, 보건 1, 시설 5, 운전 1, 사무운영 2
		8급	11	세무 1, 보건 2, 시설 6, 운전 1, 환경·공업 1
동	일반직	계	226	
		5급	21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보건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시설 1
		6급	31	행정 19,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0, 행정·농업 1
		7급	66	행정 41(행정복지 2), 사회복지 6, 운전 12, 사무운영 4, 행정·사회복지 3
		8급	70	행정 42(행정복지 7), 사회복지 20, 운전 5, 행정·사회복지 2, 행정·농업 1
		9급	38	행정 23(행정복지 2), 사회복지 15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614	
기 예 산 실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 1
		6급	9	행정 6, 시설 2, 방송통신 1
		7급	11	행정 8, 방송통신 2, 전화상담운영 1
		8급	6	행정 2, 시설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전산·방송통신 1
안 총 괄 실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3,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7급	6	행정 2, 시설 1, 환경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8급	3	시설 1, 방송통신 2
감 사 실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시설 2
총 무 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6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8
		7급	6	행정 5, 운전 1
		8급	8	행정 7, 운전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홍 보 미 디 어 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5	행정 1, 전산 4
		8급	4	행정 2, 전산 2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8	행정 4, 운전 2, 시설 1, 기계운영 1
		7급	8	행정 3, 시설 2, 운전 2, 사무운영 1

구 분	126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2017. 05. 02.()
		8급	3	행정 3
		9급	1	행정 1
		소계	29	
세 무 1 과	일반직	5급	1	행정 1
		6급	6	세무 3, 행정·세무 3
		7급	13	세무 13
		8급	7	세무 6, 전산 1
		9급	2	세무 2
		소계	28	
세 무 2 과	일반직	5급	1	행정 1
		6급	5	세무 4, 행정·세무 1
		7급	14	세무 14
		8급	5	세무 5
		9급	3	세무 3
		소계	20	
민 원 봉 사 과	일반직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2	행정 2
		8급	8	행정 8
		9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소계	19	
	연구직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소계	1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시설 5, 행정·시설 1
		7급	8	행정 3, 시설 5
		8급	8	행정 3, 시설 5
		9급	2	시설 2
		소계	25	
생 활 보 장 과	일반직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10	행정 1, 사회복지 7, 행정·사회복지 2
		8급	11	행정 2, 사회복지 9
		9급	3	사회복지 3
		소계	30	
희 망 복 지 과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7	행정 1, 사회복지 5, 보건 1
		8급	3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소계	15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노인장애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8	행정 2, 사회복지 4,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9급	2	사회복지 2
여성보육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2
		9급	1	사회복지 1
인재육성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7
		7급	4	행정 3, 시설 1
		8급	5	행정 5
문화관광 체육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4	행정 4
		8급	7	행정 7
경제 에너지과	일반직	소계	19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5	행정 2, 공업 1, 농업 1, 수의 1
		7급	9	행정 3, 공업 3, 해양수산 1, 농업 1, 수의·농업 1
		8급	3	행정 1, 농업 1, 시설 1
기업지원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5	행정 1, 시설 1, 공업 2, 기계운영 1
		8급	1	공업 1
		9급	1	행정 1
일자리 지원과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2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환경보전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환경 1



구 분	126쪽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2017. 05. 02.()	
		6급	6	환경 5, 행정·환경 1	
		7급	8	환경 8	
		8급	11	행정 2, 환경 7, 보건 1, 공업 1	
		9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위 생 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보건 1	
		6급	5	보건 3,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자 원 순 환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6	행정 2, 환경 1, 행정·환경 1, 행정·보건·환경 2	
		7급	8	행정 5, 환경 2, 보건 1	
8급	8	행정 1, 환경 5, 보건 2			
	건 설 과	일반직	소계	38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10	행정 2, 시설 3, 공업 3, 운전 1, 행정·시설 1	
7급			14	행정 3, 시설 6, 공업 3,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8급			11	행정 2, 시설 6, 공업 2, 기계운영 1	
9급			1	공업 1	
건 축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1,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6	사회복지 1, 시설 5	
		8급	9	행정 1, 사회복지 1, 시설 6, 운전 1	
		9급	2	시설 1, 사무운영 1	
도 시 개 발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2,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10	행정 2,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1	시설 1	
도 시 재 생 경 관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행정·시설 2	
		7급	5	행정 1, 시설 4	
		8급	5	행정 1, 시설 3, 사무운영 1	
		9급	1	행정 1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 1	



구 분	126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2017. 05. 02.()
		6급	5	녹지 4, 행정·녹지 1
		7급	6	녹지 6
		8급	6	녹지 6
		9급	1	녹지 1
주차관리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4, 행정·공업 1
		7급	3	행정 2, 시설 1
		8급	7	행정 4, 공업 1, 시설 2
		9급	1	행정 1
교통민원과	일반직	소계	28	
		5급	1	행정·공업 1
		6급	6	행정 4,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11	행정 10, 세무 1
		9급	4	행정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95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9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882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계	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소녀가장 등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상담고문(변경 전 법률상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고문으로 본다.

【별지 서식】

접 수 번 호	무 료 법 률 상 담 기 록 부			접 수 일
No.				. . .
사건구분 (V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 가사(혼인, 이혼, 친자, 상속, 기타) ○ 건축 상담 ○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 교통사고 상담 ○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구 분	○ 일반국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고문의견				
○ 상담으로 종결() ○ 도 움 필 요() ○ 추가회시 필요()		법률상담고문		(인)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오류동란 및 왕길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 구	오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왕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길동 일원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p>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p> <p>- 오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p> <p>- 오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p>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수인을 열기하여”를 “다수인을 열거하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다수인”으로, “단면”을 “도면”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에”를 “제증명 등에”로, “2대 이상”을 “2대 이상”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사전첨부”를 “사전 첨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라수수료”를 “따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 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 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016.12.30. 삭제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2016.12.30. 삭제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5,000원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 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11. 교통행정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4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7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변경 전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20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창단원: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
2. 소년소녀합창단원: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
3. 풍물단: 만 14세 이상 만 65세 이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